

이천 중리지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638-0518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025.12.31.)로부터 3년	없음	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12.12.(금)	26.01.27.(화)	26.02.02.(월)	26.02.05.(목)	26.02.07.(토)~ 26.02.08.(일)	26.02.09.(월)

1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공정률 60% 이후에 분양하는 후분양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미확장형 세대는 공급하지 않음을 인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청약이 불가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1.27.(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029**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2.12.(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581**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02.02.(월)	26.02.05.(목)	26.02.07.(토)~ 26.02.08.(일)	26.02.09.(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건본주택 (주소: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48-2)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이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비규제지역의 경우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는 6억원 이상 주택에만 해당)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5.12.31.)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이천시 중리지구 B3블록(중리동 518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0층 12개동 총 1,009세대 중 198세대

■ 입주시기 : 2026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029	01	059.9870A	59A	122	102	1001, 901, 701, 601, 401, 301, 201
					103	1106, 506, 406, 306, 206, 106
					104	1401, 1201, 1001, 901, 801, 301, 201, 101, 1702, 1602, 1102, 802, 502, 402, 302, 202, 102
					106	1801, 1601, 1401, 1301, 1001, 901, 701, 401, 301
					107	2006, 1906, 1806, 1606, 1506, 1206, 1006, 906, 706, 606, 506, 406, 306
					110	2001, 1401, 901, 801, 401, 301, 201, 101, 2002, 1902, 1002, 702, 102, 2003, 1403, 1103, 603, 403, 103, 2005, 1905, 905, 605, 505, 405, 105, 1806, 1506, 1406, 1306, 906, 706, 506, 406, 306, 206, 106
					111	2001, 1801, 1101, 1001, 601, 401, 201, 101, 2002, 1802, 1702, 1602, 1002, 702, 202, 102, 2003, 1903, 1803, 703, 503, 403, 303, 2005, 1905, 1305, 505, 305, 205, 105, 706, 406, 106

	02	084.9970B	84B	42	101	2001, 801, 701, 601, 501, 401, 301, 201
					102	1206, 1006, 806, 706, 506, 406, 306
					103	1001, 701, 601, 501, 401
					105	1501, 1401, 401, 301, 201, 101
					106	1606, 1406, 1306, 906, 806, 606, 506, 406, 306
					107	1301, 801, 701, 501, 401, 301, 201
	03	084.9665C	84C	34	101	2002, 1802, 1402, 1202, 1102, 802, 702, 602, 502, 402, 302, 202, 102
					105	1802, 1702, 1602, 1402, 1302, 1102, 902, 802, 702, 502, 402, 302, 202, 102
					109	2002, 1502, 1202, 1102, 602, 302, 202
	합 계			198	-	

■ 공급금액표

(단위 : 세대 / 원)

타입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호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 (35%)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1회 (20%)	2회 (20%)	3회 (20%)	입주 지정일
									2026.4.14.	2026.6.15.	2026.8.14.	
59A	122	102동 1호 103동 6호 104동 1,2호 106동 1호 107동 6호 110동1~6호 111동1~6호	1층	12	122,058,203	251,941,797	374,000,000	18,7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130,900,000
			2층	9	122,058,203	256,941,797	379,000,000	18,95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132,650,000
			3층	10	122,058,203	262,941,797	385,000,000	19,25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134,750,000
			4층	12	122,058,203	268,941,797	391,000,000	19,550,000	78,200,000	78,200,000	78,200,000	136,850,000
			5-9층	30	122,058,203	274,941,797	397,000,000	19,850,000	79,400,000	79,400,000	79,400,000	138,950,000
			10층이상	49	122,058,203	275,941,797	398,000,000	19,900,000	79,600,000	79,600,000	79,600,000	139,300,000
84B	42	101동 1호 102동 6호 103동 1호 105동 1호 106동 6호 107동 1호	1층	1	172,947,362	327,052,638	500,000,000	25,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75,000,000
			2층	3	172,947,362	335,052,638	508,000,000	25,400,000	101,600,000	101,600,000	101,600,000	177,800,000
			3층	5	172,947,362	343,052,638	516,000,000	25,800,000	103,200,000	103,200,000	103,200,000	180,600,000
			4층	6	172,947,362	351,052,638	524,000,000	26,200,000	104,800,000	104,800,000	104,800,000	183,400,000
			5-9층	17	172,947,362	359,052,638	532,000,000	26,600,000	106,400,000	106,400,000	106,400,000	186,200,000
			10층이상	10	172,947,362	365,052,638	538,000,000	26,900,000	107,600,000	107,600,000	107,600,000	188,300,000
84C	34	101동 2호 105동 2호 109동 2호	1층	2	172,885,262	344,114,738	517,000,000	25,850,000	103,400,000	103,400,000	103,400,000	180,950,000
			2층	3	172,885,262	352,114,738	525,000,000	26,250,000	105,000,000	105,000,000	105,000,000	183,750,000
			3층	3	172,885,262	361,114,738	534,000,000	26,7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186,900,000
			4층	2	172,885,262	369,114,738	542,000,000	27,100,000	108,400,000	108,400,000	108,400,000	189,700,000
			5-9층	9	172,885,262	377,114,738	550,000,000	27,5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92,500,000
			10층이상	15	172,885,262	383,114,738	556,000,000	27,800,000	111,200,000	111,200,000	111,200,000	194,600,000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협은행	1130-0061-8162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적용 주택형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	전 타입	무상

■ 추가 선택품목(기본선택 및 유상옵션) 안내

(1)시스템 에어컨(제조사 : LG전자)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규격	59A	84B	84C	비고
시스템에어컨	2개소 (거실+안방)	4,400,000	5,170,000	5,170,000	택1
	3개소 (거실+안방+침실1)	6,160,000	6,930,000	6,930,000	
	3개소 (거실+안방+침실2)	6,160,000	6,930,000	6,930,000	
	4개소 (거실+안방+침실1+침실2)	7,700,000	8,800,000	8,800,000	

※ 단위세대 기본 냉매배관은 천장형(거실+안방)으로 기본제공되며 매립냉매배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벽부형 및 스탠드형에 대한 설치는 사업주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UV나노, 공기청정, 홈IoT, 홈네트워크 연동 기능 미포함입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을 적재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냉방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대 이상 추가 설치하면 냉방 효율 저하, 실외기 소손, 실외기실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기본제공되는 천장형배관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2)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규격	59A	84B	84C	비고
드레스룸옵션	3연동 슬라이딩도어, 벽판넬 시스템선반	4,950,000	4,950,000	4,510,000	-
주방가구 특화	상부장 유리도어, 장식조명	1,100,000	1,650,000	1,650,000	-
고급형 주방수전	사틴도금 주방수전	220,000	220,000	220,000	-
공용욕실 드레스업	고급형 도기/수전/액세서리	715,000	715,000	715,000	-
공용욕실 비데일체형양변기	비데일체형양변기	1,155,000	1,155,000	1,155,000	-

부부욕실 드레스업	고급형 도기/수전/액세서리/샤워부스	990,000	990,000	990,000	-
부부욕실 비데일체형양변기	비데일체형양변기	1,155,000	1,155,000	1,155,000	-
안전방범창	원가드 안전창 (주방창 미세먼지복합창)	2,420,000	3,300,000	2,750,000	-
열차단필름	후퍼오틱 Ceramic 50	1,760,000	2,750,000	2,310,000	-

(2)-1추가선택품목(가전옵션)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품목	규격	전 타입	비고
프리미엄쿡탑	LG	LG BEI3ANHLBIE.AKOR	1,375,000	택1
	삼성	삼성 NZ63DB657CFH	1,320,000	
프리미엄오븐	LG	LG MZ941CLCAT.CKOR	990,000	택1
	삼성	삼성 NQ50T8539BW	99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LG	LG 가구부착형 DIE6PT (14인)	1,815,000	택1
	삼성	삼성 가구부착형 DW80F71Y1SEW (12인)	1,045,000	
프리미엄 빌트인 냉장고패키지	LG	LG 빌트인냉장고 패키지	6,380,000	택1
	삼성	삼성 빌트인냉장고 패키지	5,500,000	

(3)추가선택품목 납부일정 및 납부계좌

(단위 : 원, VAT포함)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비고
계약시	2026.06.15	입주지정일	-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수협은행	1010-2502-1225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2.05.(목) ~ 2026.02.14(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2.05.(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무순위 청약 당첨자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불가),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신청용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인터넷 발급용 불가),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대리인 위임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 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 공급 받으려는 경우 -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기록 대조일을 본인 출생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배우자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등재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손의 배우자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등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6.02.09.(월) 10:00~16: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계약 시	○		계약금입금증	-	건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모바일 신분증 불가), 여권
		○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본인발급용), ※인터넷 발급용 불가
	○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		실거래신고서	본인	건본주택에 비치

(추가제출)	○		전자수입인지	본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으로 제출
		○	위임장	-	건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모바일 신분증 불가),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6.02.10.(화) 10:00**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6.02.10.(화)**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참고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은 선정된 당첨자(예비입주자) 명의로만 가능하고 공동명의로는 불가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현장 및 주변 여건, 단지 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 분	사업주체 (시행사 겸 시공사)	분양대행사
상 호	(주)금성백조주택	삼일산업주식회사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83번길 9(탄방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6, 18층(역삼동, 역삼 아르누보씨티)
법인등록번호	160111-0017304	134211-0014532
대표번호	042-630-9595	02-489-3131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ic-yemizi.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건본주택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48-2

■ 분양 문의 : 031-638-0518